

◎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8. 2. 11.
개정 2012. 1. 17.
개정 2014. 8. 7.
개정 2018. 3. 22.
개정 2020. 1. 15.
개정 2020. 9. 10.
개정 2022. 8. 17.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규약 제31조에 의거 설치하는 생활체육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제 2 조(조직 및 기능) ① 본위원회 위원은 본회 이사, 체육분야 전문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1/2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0. 9. 10.〉

②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개정 2012. 1. 17.〉

1. 장애인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10.〉
2. 장애인생활체육의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15. 2020. 9. 10.〉
3.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10.〉
4.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10.〉
5. 시·군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10.〉
6.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종목 및 종목별 경기요강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10.〉
7. 기타 장애인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10.〉

제 3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 원 장 1인

부위원장 2인 이내

위 원 10인 이내

간 사 1인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제 4 조(임기) ① 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본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5조(위원의 선출방법) ①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8. 7, 2018. 3. 22.>

② 외부위원은 위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받아 위원풀을 구성하고, 위원풀에서 2배수를 무작위 추출하여 특정 지역과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원 위촉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여야 하며, 감독기관 공무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0. 9. 10.>

1. 체육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체육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5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검증절차를 거친다. <개정 2020. 9. 10.>

④ 위원회 위원은 의무사항이 기재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0.>

⑤ 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상근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북장애인체육회 직원이 한다. <신설 2020. 9. 10.>

[제목개정 2020. 9. 10.]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즉시 제척한다.

1.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기관의 소속된 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10.]

제5조의3(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조2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 9. 10.]

제6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본위원회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정족수) ① 본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다만, 본회의 요청 또는 위원 2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 9. 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9. 10.>

④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9. 10.>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⑤ 위원의 대리로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은 제5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0.>

제7조의2(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은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면심의로 심의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② 심의안건 결과는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10.]

제7조의3(위원회 심의방식) ①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일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9. 10.]

제7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안전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10.]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 관계직원 또는 해당부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과 초청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규약에 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0. 9. 10.>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대회) 운영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중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 관련 전보나, 심의,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의무 관계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확인자

(서명)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0. 9. 10.>

서 약 서

직 위 :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

성 명 : _____

상기 본인은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4.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 향응,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알선행위 금지
5.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0. 9. 10.>

위 임 장				
위임인 (위임하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수임인 (위임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p>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아래의 위임 사항을 위임하며, 위임사실을 알리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p>				
위 임 사 항				
<p>1. 위임장의 용도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년 ○○월 ○○일</p>				
위 임 인 : ○ ○ ○ (인)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0. 9. 10.>

서면결의서

의안명 :

의결주문 :

제안사유 :

위 의안을 제7조2 제1항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아래의 해당란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장) : (인)

동의함(可)

동의하지 않음(不)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0. 9. 10.>

제 차 생활체육위원회 회의록

1. 구 분 : 제 차 생활체육위원회

2. 회의일시 :

3. 회의장소 :

4. 참석현황

제 적 : 명, 참석 : 명, 대리참석 : 명, 불참 : 명

5. 부의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제 호		
제 호		
제 호		

6. 진행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년 월 일